「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8. 1.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평창군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 지원 및 대상 등(안 제3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해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강원도에 지원 요청

○ 지원범위 및 기준(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에 대해 지원 가능

○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장기여행 또는 입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 받거나 직접 조사
- 군수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

○ 간접지원의 정보 제공(안 제7조)

-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지급방법(안 제8조)

-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수(안 제9조)

-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의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재원확보(안 제10조)

-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 및 대상
안 제4조에서는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 및 기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간접지원의 정보제공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법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환수,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 1.17일에 개정·공포되고 1년을 경과하여 2018. 1.18일부터 시행되는 법 제66조제4항의 당연규정에 따른 필요적 조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국가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해 또는 마비(痲痺) 현상이 발생된 재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한정하되, 해당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그 원인제공자(제5조에서 “원인자”라 한다)의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사정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자 및 신청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관할 구역 읍·면·이장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군 및 국·도비 보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

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 또는 원인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기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자에게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그 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

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의 정보제공)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간접지원을 위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군수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재난피해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확보)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구호, 지원금 또는 물품의 지급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